

제2기재란 일부 청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견(첫 번째 용지의 2의 계속)

PCT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본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 청구항: 4
이 청구항은 본 기관이 조사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관련됩니다. 즉, 상기 청구항 제4항은 도입부에서 장치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의 특징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청구항:
이 청구항은 유효한 국제조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국제출원의 부분과 관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 청구항:
이 청구항은 종속청구항이나 PCT 규칙 6.4(a)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장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기재란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경우의 의견(첫 번째 용지의 3의 계속)

본 국제조사기관은 본 국제출원에 다음과 같이 다수의 발명이 있다고 봅니다.

1. 출원인이 모든 추가수수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였으므로, 본 국제조사보고서는 모든 조사 가능한 청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추가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도 모든 조사 가능한 청구항을 조사할 수 있었으므로, 본 기관은 추가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출원인이 추가수수료의 일부만을 기간 내에 납부하였으므로, 본 국제조사보고서는 수수료가 납부된 청구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출원인이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국제조사보고서는 청구범위에 처음 기재된 발명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기재

- 출원인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료 납부(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추가수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 출원인의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수수료가 납부되었으나 이의신청료가 보정요구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9/003953

<p>A.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류(국제특허분류(IPC))</p> <p>IPC⁸: F04B 49/12 (2006.01); F04B 49/16 (2006.01); F04B 49/24 (2006.01)</p>		
<p>B. 조사된 분야</p> <p>조사된 최소문헌(국제특허분류를 기재)</p> <p>IPC⁸: F04B</p> <p>조사된 기술분야에 속하는, 최소문헌 이외의 문헌</p> <p>국제조사에 이용된 전산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의 명칭 및 검색어(해당하는 경우))</p> <p>EPODOC, WPI, XFULL</p>		
<p>C. 관련 문헌</p>		
카테고리*	인용문헌명 및 관련 구절(해당하는 경우)의 기재	관련 청구항
Y	WO 2008/096999 A1 (LG ELECTRONICS INC.) 2008.08.14 (14.08.2008) 요약; 도면 4-16; 페이지 6, 라인 9 - 페이지 14, 라인 1; 청구항 1-24; --	1,3,5-9
Y	WO 2003/064857 A2 (BRISTOL COMPRESSORS, INC.) 2003.08.07 (07.08.2003) 요약; 도면 1, 17, 18; 문단 121-131; ----	1,3,5-9
<p><input type="checkbox"/> 추가 문헌이 C(계속)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응특허에 관한 별지를 참조하십시오.</p>		
<p>* 인용된 문헌의 특별 카테고리:</p> <p>“A”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기술수준을 정의한 문헌 “T”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출원과 상충하지 않으며 발명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인용된 문헌</p> <p>“E” 국제출원일보다 빠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나 국제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선출원 또는 특허 문헌 “X”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 하나만으로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L” 우선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 또는 다른 인용문헌의 공개일 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이유를 명시)를 밝히기 위하여 인용된 문헌 “Y”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문헌과 조합하는 경우로 그 조합이 당업자에게 자명한 경우 청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O” 구두 개시, 사용, 전시 또는 기타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 “&” 동일한 대응특허문헌에 속하는 문헌</p> <p>“P” 우선일 이후에 공개되었으나 국제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문헌</p>		
<p>국제조사의 실제 완료일</p> <p>2011년 01월 27일 (27.01.2011)</p>		<p>국제조사보고서 발송일</p> <p>2011년 02월 04일 (04.02.2011)</p>
<p>ISA/AT 의 명칭 및 주소</p> <p>오스트리아 특허청</p> <p>팩스번호 +43 / 1 / 534 24 / 535</p>		<p>심사관</p> <p>HORZER K.</p> <p>전화번호 +43 / 1 / 534 24 / 359</p>

국제조사보고서
대응특허에 관한 정보

국제출원번호

PCT/KR2009/003953

국제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특허 문헌	공개일	대응특허문헌	공개일
WO A 2008096999		US A1 2010322790	23.12.2010
		CN A 101605991	16.12.2009
		EP A1 2122170	25.11.2009
		WO A1 2008096999	14.08.2008
		KR B1 100830944B	20.05.2008
WO A 03064857		WO A2 03064857	07.08.2003
		EP A2 1478853	24.11.2004
		AU A1 2003212781	02.09.2003
		US A1 2002187057	12.12.2002